

2023-겨울학기 및 (연계)2024-1학기 현장실습학기제(HY-WEP) 실습생 참여신청 안내

장학금 지급

2023-겨울학기 현장실습 선발 및 소정의 교육 이수 시

장학금 지급

프로그램 안내

1. 실습기관 : 현장실습지원팀을 통해 모집된 기업, 공공기관, 정부기관, 연구소 등

2. 지원사항

가. 현장실습학기제 장학금 : 2023-겨울학기 현장실습 선발 및 소정의 교육 이수 시

장학금 30만원 지급

나. 학점

1) 겨울학기: 3학점(타전공 일반선택)

2) 2024-1학기: 학과심사에 따라 최대 15학점(전공학점 9학점, 이외 6학점은 일반 또는 교양)(이수단위: 100~400)

다. 실습지원비: 실습기관에서 월 최저임금의 75%(또는 100%)이상 지급

라. 보험: 상해보험(학교에서 가입), 산재보험(실습기관에서 가입)

3. 실습대상 : 최소 4학기(편입생은 1학기) 이수(예정)자

※ 4학기를 이수했다면 2학년 학생도 신청 가능

4. 실습기간

가. 2023-겨울학기 : 2023년 12월 26일(화) ~ 2024년 2월 29일(목) 중 약 8주

나. 연계과정(2023-겨울학기+2024-1학기) : 2023년 12월 26일(화) ~ 2024년 6월 21일(금) 중 약 24주 이상

-연계과정의 경우 기관에서 모집 공고 시 연계를 명시함

5. 진행일정

기간	진행사항	비고
10월 11일(수)~11월16일(목)	실습기관 참여신청 접수	- 기관별로 모집 전형 일정이 다름 - HY-WEP 접속 후 기관 목록에서 세부 모집일정 확인
10월 11일(수) ~ 11월 23일(목) ~ 12월 8일(금)	(1차 일정) 재학생 접수 및 선발 (추가 일정) 재학생 접수 및 선발	
12월 18일(월) ~ 12월 22일(금)	선발생 대상 사전교육(기간 중 하루, 온라인)	선발 학생 필수 교육
실습 시작 시	3자 협약서 작성	실습 시작 전 E-mail 전달 예정

※ 진행일정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. 선발전형은 실습기관 주관 하에 진행 됨

2023-겨울학기 현장실습 수강 자격 정리

학생의 상태	계절학기
2023-2학기 까지 최소 4학기 수료(예정)자(편입생은 최소 1학기 수료자)	수강 가능
2023-겨울학기에 휴학생 신분 (계절학기 현장실습은 휴학생도 수강 가능)	수강 가능
2024-1학기 학업연장학기 예정자	수강 가능
2024년 1학기에 학사학위취득유예(졸업유예) 신분 예정 - 수강신청(유) 로 선택	수강 가능
2024년 1학기에 학사학위취득유예(졸업유예) 신분 예정 - 수강신청(무) 로 선택	수강 불가
2024년 2월 졸업예정자	수강 불가

※ 학사학위취득유예자 : 겨울학기만 현장실습을 이수하여도 2024-1학기에는 최소 1학점 이상 수강신청 해야함

2024-1학기 현장실습 수강 자격 정리

- '학기대체'와 '선택형 4+1' 자격에 일부 차이가 있음에 유의

학생의 상태	비고	학기 대체	선택형 4+1
2024-1학기가 수업연한 초과한 학업연장학기임	단, 4+1 이수 후에는 정규학기(학업연장학기 포함)가 한 학기이상 남아있어야 함	수강 불가	수강 가능
2023-겨울학기까지 현장실습 이수학점을 18학점 완성	4+1은 기존 현장실습 이수학점과 상관없이 재학 중 2회 수강 가능	수강 불가	수강 가능
2024-1학기 이전에 학기대체 장기현장실습을 이미 1회 이수	학기대체 장기현장실습은 재학 중 1회만 가능, (4+1 장기현장실습은 이와 별도로 2회 까지 가능)	수강 불가	수강 가능
2023-겨울학기까지 졸업요건 완성하고 학사학위취득유예 신분 예정	학사학위취득유예생 중 수강신청(유) 선택	수강 가능	수강 불가
2023-겨울학기까지 졸업요건 완성하고 학사학위취득유예 신분 예정	학사학위취득유예생 중 수강신청(무) 선택	수강 불가	수강 불가
2024-1학기에 휴학생 신분 예정	재학생 신분으로만 가능 (단, 휴학생이더라도 최종선발 된 후 3월 1일 이전까지 복학하면 가능)	수강 불가	수강 불가
2024-1학기 까지 최소 4학기(편입생은 1학기)를 수료하지 않음	최소 4학기(편입생1학기) 수료해야 가능	수강 불가	수강 불가

기타

1. 실습 지원은 한번에 한 기관만 신청 가능하며, 탈락 시에 다시 지원 가능
2. 현장실습은 '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'에 따라 진행됨
3. 실습시간: 1일 8시간, 주 40시간 이하 원칙(중식 등 휴게시간 제외)
4. 실습기관은 특별한 협약사항이 없는 한 실습생을 채용할 의무가 없음
5. 실습기관에서는 모집자격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없을 경우 학생을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
6. 실습 1개월 당 1일의 휴가 가능
7. 현장실습 수행 학기 동안 현장실습 학점 외 다른 학점을 동시에 신청하거나 취득 불가
* 다만 현장실습 일정 및 시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(주말)에서 사회봉사 학점 취득은 가능
* 계절학기 현장실습의 경우 온라인 전용 1강좌 동시 수강 허용

